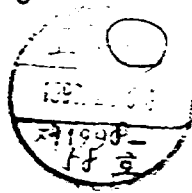


“음식물 쓰레기 50% 줄입니다”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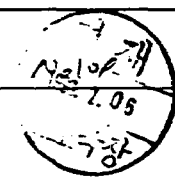
우 100-744 /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3707-8153~4 / 전송 3707-8169
처리부서 : 도로관리과 (시청제2별관 3층) 담당 : 한정무

문서번호 도관58710-141
시행일자 1998. 2. 6
(제1안)
수신 내부결재



취급		시	장
보존	년		
국	장		
과	장	법무담당관심사필	
계	장		
기안	한정무	협조	

제 목 성산대교 차량운행제한 변경 공고



1. 건안 교관58710-116('98. 2. 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공고제1995-365호('95.12.30)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(총중량 13톤초과 차량)된 성산대교가 설계하중인 DB18(32.4톤)로 성능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운행제한을 총중량 32톤초과 차량 및 건설기계로 변경코자,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.

따로붙임 1. 차량운행제한공고(안) 1부.

2. 위치도. 끝.

(제2안)

수신 서울지방경찰청장

참조 교통관리과장

제 목 차량운행제한(공고) 변경 통보

1. 도설58710-1124('95.12.21)호 및 도관58710-120('98. 2. 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대호와 관련 서울특별시공고제1995-365호('95.12.30)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(총중량 13톤초과 차량)된 성산대교의 차량운행제한을 따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

이 변경코자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습
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1. 차량운행제한공고(안) 1부. 끝.

(제3안)

수 신 건설안전관리본부장

참 조 교량관리부장

제 목 차량운행제한 공고 통보

1. 교관58710-116('98. 2. 3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대호와 관련 차량운행제한 변경에 따른 공고는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법
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의 공고(안)과 같이 공고('98. 2.16일자 시
보 게재)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운행제한의 변경에 따른 안내·규제표시판을 관
련부서와 조속히 협의·설치하는 등,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따로붙임 1. 차량운행제한공고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4안)

수 신 공보담당관

제 목 시보 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시보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 구분 : 공고

나. 게재 건명 : 차량운행제한

다. 게재 내용 : 따로붙임

라. 법적 근거 : 도로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

따로붙임 1. 차량운행제한공고(안) 2부. 끝.

도로관리과장

006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8 - 호

차량운행제한 공고

도로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자
같은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
합니다

1998. 2.

서울특별시장

도로의 종류	· 특별시도	시 설 명	· 성산대교
제한의 대상	· 총중량 32톤 초과 차량(건설기계)	구 간	· 성산대교 전구간
기 간	· 1998. 2. 17. 00:00부터 무기한		
이 유	· 성산대교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 방지		
문 의 처	·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(전화번호 3707-8153~4) ·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(전화번호 3708-2389~90)		
위 치 도	(생략) ·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관리과 · 건설안전관리본부 교량관리부에 도면 비치		